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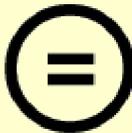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학년도 2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 학위논문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 인권 침해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류 경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 인권 침해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Learn-Violence in Student-Athletes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류 경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 인권 침해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지도교수 김 옥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심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류 경

김류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현 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백 승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옥 주 인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문제	5
4. 연구의 제한점	5
5. 용어의 정의	6
1) 학생운동선수	6
2) 인권	6
3) 스포츠 인권	6
4) 폭력	7
II. 선행연구 고찰	8
1. 학생운동선수에 관한 연구	8
2. 학생운동선수 문화에 관한 연구	8
3. 인권 침해 관련 연구	9
4. 인권 교육 관련 연구	10
5.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실태 및 인식관련 연구	11
6.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방안 관련 연구	12

7. 문화기술적 연구	13
Ⅲ. 연구 방법	14
1. 문화기술적 연구	14
2. 연구 설계	15
1) 연구 기간	15
2) 연구 절차	15
3. 연구 참여자	15
4. 자료 수집	17
5. 자료 분석	18
1) 문헌 자료 및 사례 기록 분석	18
2) 귀납적 범주 분석	19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20
1) 구성원 간의 검토	21
2)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21
3) 트라이앵글레이션(다각도 측정법)	21
Ⅳ. 학생운동선수로의 라이프 스토리	23
Ⅴ.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권 침해 실태	25
1.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침해실태	25
1) ‘너는 운동부니까’라는 특별대우	25

2) 학업과 운동 사이에서의 혼란	27
2. 학생운동선수의 폭력권 침해 실태	30
1) 합숙 생활 내 선, 후배 간 위계질서	30
2) 폭력의 대물림 및 폭력효과	31
VI.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교육 경험	35
VII.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개선 방안	37
1. 학습권	37
2. 폭력권	39
3. 체계적인 인권교육	40
4. 대학 학생운동선수의 미래설계 방향	41
VIII. 결론 및 제언	43
1. 결론	43
2. 제언	44
참고문헌	45
부록	48

표 목 차

표 1. 기간별 연구 절차	16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6

그림 목 차

그림 1. 자료 분석 절차	20
----------------------	----

ABSTRACT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Learn–Violence in Student–Athletes

KIM RYU–KYEONG

Adviser : Prof. KIM OK–JU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violating the right to learn and violence in student-athletes from an ethnographic view and provide methods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problem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student-athletes attending C University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nd the interview data were transcrib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athlete has been actively guaranteed through various projects or regulations. For example, the e-school project is operat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athletes and participation in U-League and KUSF is limited to college student-athletes who obtained GPA C⁰ or higher in previous two semesters from 2017. In addition, since this year, all colleges should clearly publish the reflection and percentage of school records and the standards of evaluation in the admission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uarantee system of the right to learn in receiving application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athletes.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extend divers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thods in order that student-athletes can reduce the damage of the right to learn and perceive the importance of study as well as athletics.

Second, regarding to violence, student-athletes' damage of human rights should be transparently and rapidly investigated to take a step through the sports ethics center. As student-athletes, parents, school staff, or peers feel anxious about the report of damages, an on-line report center to anonymously report should be actively operated to thoroughly investigate human rights problems. Moreover, a state, a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ake the lead in making a framework act on sports in order that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sports society.

Thir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train human rights experts rather than show a video to students for better face-to-face education for sports ethics. In particular, in the situation of COVID-19, it is necessary to invite a professional lecturer in human rights and give teachers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quality development and empowerment via Zoom(online training). In addition, face-to-face education for human rights should be provided for teachers when the situation eases.

Fourth, when human rights are solved, the student-athlete dropout will decrease and student-athletes can design a broader future. Accordingly, various educational supports are required for student-athletes to explore and select the career which demonstrates their ability. Moreover, colleges

should introduce career education for student-athletes. In particular, the sports society should actively give supports such as the support of professional player jobs and opportunities to explore a career.

When these improvement methods are solved, human rights problems will be settled and sport human rights will be developed in student-athletes and the sports society. Further researches are necessary to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more concrete and institutional solutions for the human rights problems of student-athletes.

Key word : human rights, student-athletes, ethnographic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9)에서 정의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는 권리를 말한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인권이나 인간의 권리로 부르는 것이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인권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이며 각 사회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에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정권이 대학살을 저질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전범국 일본에 의해 인권침해를 비롯한 희생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UDHR)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간결하고 정확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표현하였는데 처음 두 조항은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권리와 존엄을 갖는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심과 이성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은 바로 ‘보편성(Universality)’이며 보편성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남성, 여성, 아이, 노인, 흑인, 백인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가치가 담긴 의미이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꾸준히 일어났으며 홍콩에서 일어난 ‘홍콩 시위’의 경우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여 시작되었다. 시위 과정에서 1,300여 명 이상의 국민이 체포되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체포 및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폭력과 비인도적 대우가 일어났으며 홍콩 시위는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었지만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시민들의 미국 전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건도 인권 불평등 문제로 다시 논의되었다.

한겨레(2017)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권을 존중한다고 믿는 사람은 셋 중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차별로는 연령차별, 학력·학벌 차별, 성차별이 꼽혔으며 현 사회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차별이 시행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1위가 경제적 지위, 2위가 학력·학벌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 이 두 자본의 불평등이 대한민국에서 인권침해의 심층적인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및 미국 시위 등 여전히 많은 나라의 사회 각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은 국가위상제고, 국부창출, 스포츠를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했다. 당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침은 엘리트 스포츠를 중점 육성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을 기억했던 세계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스포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열었던 아돌프 히틀러와 많이 닮아있다(데일리스포츠한국, 2017). 여전히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지상주의에 빠져있어 은메달이나 동메달만 따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여전히 메달, 메달 중에서도 금메달이 목표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 스포츠는 곳곳이 병들어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은 무시되어 있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사고, 부정적 일탈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 인권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올림픽, 월드컵 등을 비롯한 대회에서 성과가 나오면 묻히거나 용기내서 말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권문제가 대중매체에 보여지기 시작했다. 2008년에 방영되었던 KBS 1TV 시사기획 ‘쌈,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에서는 연령과 운동종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스포츠성폭력의 실체를 파헤쳤다. 여자 중학교 운동부 감독의 발언, 즉 “운동만 가르치나, 밤일도 가르

처야지!”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여성 선수들을 유흥업소 여성들처럼 비하하며 “전 룼살롱 안가요.”란 여자농구 전 감독의 발언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 문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서 사회적 공분을 촉발하였다(김광옥, 2013). 또한 2018년 12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자신이 가르치던 선수를 미성년자 시절부터 폭행하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올해 6월 팀닥터, 감독,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버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속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러한 스포츠 인권문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만든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스포츠는 운동을 시작한 학생시절부터 수업을 포기한 채 체벌과 가혹한 훈련을 통해 운동을 하고 일찍이 합숙생활을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운동부는 지도자와 학생의 관계, 선후배간의 관계에서의 위계질서가 크게 작용하면서 폭력, 성폭력 등 인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인 것이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승리지상주의와 관련된 스포츠인권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다. 체육 특기자 입시부정 문제,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문제, 선수관리부실(무리한 체중감량, 과도한 훈련)문제, 심지어 학생선수들의 진학 입시에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김광옥, 2013).

MBC뉴스(2019)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업팀 성인선수, 1,200여 명을 상대로 인권실태조사 한 결과, 34%의 선수들이 언어폭력을 당했고, 15%가 넘는 선수들은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인 선수 10명 중 1명은 '강제 키스와 포옹', '성적 농담'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실태 조사결과보다 3배 높은 수치이다. 또 면접조사에 응한 일부 선수들은 감독의 운동에 대한 혹사, 관계 및 불화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시도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봐도 팀 해체나 보복 위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대한체육회 등에 인권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MBC뉴스, 201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문화의 확립과 스포츠 인권 증진을 2020년 대한체육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대한민국 근대체육 100년이자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며 “100주년을 맞는 이 해를 새로운 스포츠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힘껏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초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들이 발생하며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체육계의 어두운 단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체육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각종 체육 비리를 근절하고 진정한 스포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도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2020).

이와 같은 스포츠분야에서의 인권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로 스포츠 인권의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정용우, 오현택, 2015),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홍덕기, 2008),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인권의식과 자기관리, 스포츠일탈, 성취 목표의 관계(김석현, 2016),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김혁, 2016),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스포츠 기본권 실태(서동엽, 2011),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사회학적 제도주의 접근(김광옥, 2013)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분석 그리고 제도적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나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실태와 분석, 개선방안을 학년별, 종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현실과 현황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문제 중 학습권 및 폭력(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의 인권침해 실태 및 사례를 파악하여 교육적,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하고,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교육에도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문제(학습권, 폭력) 및 인권 침해실태와 분석 등을 학년별, 종목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실태 및 사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및 행정적 개선, 인권교육 문제 개선 등 구체적인 문제 개선과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교육을 위한 스포츠 현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운동선수의 전반적인 기본 사항은 어떠한가?
 - 1-1. 학생운동선수의 라이프스토리는 어떠한가?
 - 1-2.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1-3. 학생운동선수의 폭력문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학생운동선수의 적극적인 인권교육을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자료 수집의 주요 방법이다. 그러므로 G광역시 C대학교 일부 학생 운동선수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기에 전국적인 학생 운동선수들의 의견과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료수집의 방법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소외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변인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는다. 더불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자 학생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남녀 모든 대학 운동선수, 모든 연령대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에 관한 문제 중 학습권과 폭력(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으로만 구성하였기 때문에 인권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행동, 생각, 가치관 등을 깊이 있게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generalization)시키기보다는 비슷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전이성(transferability)에 그 의의를 둔다.

5. 용어의 정의

1) 학생운동선수

학생운동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서 각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이면서 학교운동부에 속해 있는 학생을 말한다(학교체육 진흥법, 2013). 본 논문에서는 대한체육회(2019)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를 의미하고 있다.

2) 인권(human rights)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로 표기된 것이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1항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스포츠 인권

스포츠 인권이란 모든 스포츠 인이 존재의 일반적 가치로서 지니게 되는 동등한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말한다. 스포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폭력 및 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권익 증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대한체육회, 2019).

4) 폭력

불법 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서동업, 2011).

(1) 신체적 폭력

본 연구에서의 신체적 폭력은 단체생활, 훈련과정 및 개인훈련에서 일어나는 신체에 대한 처벌 및 구타행위를 의미한다.

(2) 언어적 폭력

본 연구에서의 언어적 폭력은 지도자나 직속계열 선배들이 학생운동선수에게 언어적으로 헐박, 명예훼손, 인격모독,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언어적 폭력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대를 놀리기 위한 의도를 가진 별명을 부른다거나 욕설, 일상 행동 속에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 공포감을 생기게 하여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의 언어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박성수, 1997).

(3) 성적 폭력(성추행, 성희롱)

본 연구에서의 성적 폭력은 지도자나 직속계열 선배들이 학생운동선수에게 신체적, 육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 성과 관련된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스포츠 폭력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림 하는 것 등을 말한다(한국체육철학회, 2015).

II. 선행연구 고찰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생운동선수와 학교 운동부의 폭력, 성적 폭력, 인성, 학습권 실태와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많으며, 본 연구의 선행연구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운동선수에 관한 연구

류태호(2003)의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체육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에서도 용어의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아 ‘학생선수’, ‘운동선수’, ‘선수학생’, ‘운동부 학생’ ‘운동부원’, 등의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학원 및 학생스포츠는 스포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영역과 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영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가 강조될 때는 전문스포츠 영역으로 ‘학생’이 강조될 때는 교육의 영역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김현재(2015)의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생활기술과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운동선수(Student-athlete)란 용어는 NCAA(미국대학체육협회) 실무원장을 지낸 Walter Blers가 1953년에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 용어는 학생과 운동선수라는 이원화되고 분리된 역할을 의미하는 말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걸쳐 폭 넓게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학생운동선수가 학교에 다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운동경기 참가와 학업 정진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2. 학생운동선수 문화에 관한 연구

류태욱, 이주욱(2004)의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의 생활은 일반학생과는 다른 생활이었으며,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생활과는 분리되는, 구별되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학생이 아닌 직업선수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운동선수는 ‘무늬만 학생’인 것이다. 학생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도 이들에게는 달랐다. 운동부 활동은 교육적 활동이 아니라 전문적 활동과 다르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김한범(2017)의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부 막내시절(1학년)에는 다른 일반 학생들은 당연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핸드폰, 샤워용품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지도자의 허락 없이는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운동부 구성원에 대한 통제 는 학생선수들이 보호와 관리대상이라는 지도자들의 지배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학생선수들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바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 침해 관련 연구

김두현, 최선화(2011)의 「학생선수의 안전권 보호정책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첫째, 학생선수의 안전권 보호정책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 인식 하에서 안전권의 보호정책을 개선시켜야 한다. 둘째,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선수안전을 위해 스포츠 안전 관련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스포츠행사의 안전운영을 위한 스포츠안전 매뉴얼을 규정하고, 스포츠안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선수의 폭력성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효행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및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학생선수의 안전권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다른 체육계, 모든 안전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학부모, 교사 등 어른들의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2009)의 「중, 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학생선수가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로만 규정되는 구조 안에서의 학습권 박탈, 그리고 학습능력 저하와 학습권 침해로 인한 삶의 제약과 대안 부재, 성폭력 및 폭력 발생의 중층 구조 등이 분석되었다.

4. 인권교육 관련 연구

구정화(2017)의 「인권교육의 의미 재탐색-최근 제기되는 의문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권교육의 의미는 기존의 다섯 가지에 세 가지를 더하여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경험과 삶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을 구성하여 사회 변화를 생각하는 학습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경험 및 관점을 강조한다. 넷째, 인권교육에서는 사회구조적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친화적 환경을 강조한다. 여섯째, 인권교육은 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기능한다. 일곱째, 인권의 상호 호혜성으로 인해 인권교육은 타인의 권리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여덟째, 공공부문의 인권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문화의 제도화를 위한 발판으로 작동한다.

허종렬, 나달숙, 이대성(2013)의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 분석과 인권교육 관련 외국의 제도화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논의를 통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다.

김자영, 이로미, 김진희(2019)의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형태의 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상황은 문제적이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교사를 비롯한 학교교육의 주체들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의(大意)는 누구나 수긍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의 인권존중과 타인의 인권 존중이 실천 맥락에서는 논쟁적이고 대치적으로 이해 될 만큼, 인권교육이 더 이상 상호 존중과 포용성을 키워주는 화합의 교육 기제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5.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실태 및 인식관련 연구

서동엽(2011)의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스포츠 기본권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칭찬은 칭찬을 받은 학생이 89.1% 나왔으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감독선생님’, ‘코치선생님’ ‘같은 운동부 선수’ ‘부모님’ 순으로 나타났다. 칭찬 가장 많이 듣는 장소는 ‘운동장’, ‘운동부실’과 혹은 ‘체육관’,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들을 때는 ‘대회나 시합 때’, ‘훈련할 때’,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듣는 이유는 ‘시합에 이겨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규칙을 잘 지켜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욕설은 욕설을 들은 학생이 80.3% 나타났으며, 욕설을 가장 많이 들은 대상은 ‘코치선생님’, ‘감독선생님’, ‘같은 운동부선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체벌은 체벌을 받은 학생이 71.5%로 나타났으며, 체벌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코치선생님’, ‘같은 운동부 선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성적폭력 실태는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몸에 대한말로 창피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1.6%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몸에 대한 말로 창피 가장 많이 당한 대상은 ‘코치선생님’, ‘같은 운동부선수’ ‘감독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장원일(2016)의 「운동선수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첫째,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인권을 정신적자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수들이 인식하는 정신적 자유에는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 사생활의 자유는 여가시간 강탈, 사생활 침해로 나타났고, 평등권은 동등한 대우, 부당한 차별,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의 자유는 강압적 분위기, 강요가 나타났다. 둘째,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인권을 신체의 보호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수들이 인식하는 신체의 보호에는 폭행, 폭언, 성폭력이 있었다. 폭행은 인권 침해, 지나친 체벌, 부정정서 발생으로 나타났고, 폭언은 지도자의 태도, 자존감 상실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이자 말하기 힘든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2009)의 「중, 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학습권 침해는 성폭력 및 폭력을 목인

하는 주요한 발판이자 학생선수 인권 침해의 구조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실력 향상에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력 향상과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자존심 저하나 사기를 초래하여 운동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학생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지도자 남성/ 학생 남성과 지도자 남성/ 학생선수 여성 간의 성폭력 그리고 학생선배 남성/ 학생 후배 남성의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는 다양한 정치 학이 작용하는 현상이 폭력과 연속선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방안 관련 연구

박순오(2010)의 「태권도 선수의 인권보호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첫째, 법적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체육법」 제정안이 발의(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되었지만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법」의 주요내용 중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가 기본 학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출전을 제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홍덕기(2008)의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인권개선방안을 ‘외부 사회적 감시망의 작동(1절)’, ‘정책의 전환(2절)’, ‘인식의 전환(3절)’로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부 사회적 감시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의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투명사회협약의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학원스포츠 정책이 ‘인권신장’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단기 숙제를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정책의 전환에 의한 타율적 개선 및 인식전환에 의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개선의지를 통해 체육 본질의 모습을 찾아야 됨을 주장하였다.

김혁(2016)의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에 따르면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건전한 합숙소 문화지향· 질서정연한 응원문화 조성 및 홍보 및 경기장 안전관리·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방지교육),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인식제고 및 개

선사항이 있었다. 법 제도 개선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체육인 복지법 제정, 스포츠 훈련장 CCTV 의무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

7. 문화기술적 연구

이민주(2006)의 「한국무용수의 창작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창작의 경험에 있어 무용수들은 그들의 인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창작경험은 단지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경험이 아닌 실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인 것이다.

김수련(2008)의 「학부모의 체육 과외 활동 선택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에 따르면 체육 과외활동이 보편화 된 강남지역의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체육 과외활동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부모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5명의 학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문화기술지의 대표적인 연구기법인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통해서 연구문제에 답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문화기술적 연구

학자와 학문 분야에 따라 질적 연구의 지적 전통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입장이 매우 다르다. 인류학자는 인류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전통에 대해 논의하고 역사학자는 역사학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 또는 교육학자는 교육학분야에서 질적 연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설명 방법은 질적 연구가 그 어떤 특정한 한 개의 학문 분야에서 탄생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학문 분야에서 간학문적으로 발전해 온 특징에 기인하는 것과 같다. 스포츠사회학 분야도 또한 사회학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질적 연구의 지적 전통과 이론적/방법론적/학문적 배경에서 큰 영향을 받아 다양한 질적방법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Creswell(1998)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전통을 사례연구, 현상학, 생애 사, 근거이론, 문화기술학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의 전통은 독보적인 하나의 분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의 지적전통과 상호작용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질적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한 집단인 학생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문화 기술적 연구는 어떤 한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이다(Spradley, 1980). 여기에서 문화(culture)는 집단의 행동이나 관습, 삶의 방식, 언어, 건물 등이 될 수 있다.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문화를 거시적이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또한 집단 구성원의 내부자적 관점(emic) 또는 외부자적 관점(etic)에서 그 문화를 해석해 가는 방법이다(Creswell, 1998). 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다른 문화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참여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연구 과정으로서, 다른 문화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문화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타 문화를 현지인들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현장연구방법(fieldwork method)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재철, 1997). 이러한 문화 기술적 연구는 인류학의 한 분과로서 예외적인 질적 연구방법이었으나 문화인류학의 현지 참여 조사와 문화 상대주의, 총체성은 모든 질적 연구의 기본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연구 설계

이 연구는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태는 어떠한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생운동선수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통계적 조사 분석이나 철학적 논리보다는 심도 있는 심층면담, 긴 기간의 참여관찰에 의한 문화기술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는 문제 파악 및 연구 계획 수립 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단계로 진행되었다.

1) 연구 기간

이 연구는 2020년 4월에 문제 파악과 연구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약 7개월간 이루어졌다. 특히,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수업시간과 훈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연구 절차는 크게 문제 파악 및 계획 수립,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연구 설계는 <표 1>과 같다.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질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편의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편의 표집법은 연구자가 큰 어려움을 받지 않고 연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연구를 잘 참여해줄 사람들,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표집의 장점은 표본추출이 편리하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표본선택이 용이하므로 결과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 운동학생선수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G광역시 C대학교 학생운동선수 6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 기간별 연구절차

단계	기간	주요 활동	비고
문제과약 및 계획 수립 단계	2020.04 ~ 2020.05	연구 주제 및 문제 선정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연구 계획서
연구 참여자 선정	2020.05 ~ 2020.06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목적 및 진행과정 안내	11명의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	2020.07 ~ 2020.09	문서자료 수집 심층면담	면담 자료 전사
자료 분석	2020.09	사례기록 분석 귀납적 범주 분석	자료의 진실성 및 타당성 확보
보고서 작성	2020.10	전문가 및 동료 협의	연구보고서

표 2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성별	나이	학년	운동경력	운동종목
1	A	남	21	1	10년	단체종목A
2	B	남	21	2	10년	단체종목A
3	C	남	20	1	8년	개인종목A
4	D	남	21	2	9년	개인종목A
5	E	남	21	2	10년	개인종목A
6	F	남	21	2	8년	단체종목B

4.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정보를 얻기 위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통한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6명의 학생운동선수와 개인별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심층 면담에 들어가기 전, 선정된 주제를 명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면담 진행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 및 자료들을 검색하여 문헌 고찰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학회지, 학술지, 학위 논문, 언론 보도 자료, 그 밖의 전문가들이 기존에 실시한 연구와 관련 주요 문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둘째,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및 실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인간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며 개인 혹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간에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14). 심층면담은 흔히 피면담자의 삶과 경험, 그리고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영천, 2016). 본 연구를 통해 학생운동 선수의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연구 참여자의 세세한 영향이나, 감정, 경험, 태도 등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면담자와 같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여 문제해결 및 방안제시의 관점에서 학생운동 선수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원활한 면담을 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자료들을 토대로 간략한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면담 시간과 장소의 적정성, 면담 장소 위치를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가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내부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와의 심리적 공감대의 형성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깊은 심리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라포가 형성된 후, 심층면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연구를 시작하였다. 면담 내용은 스포츠인권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피면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화 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장소, 면담 소요시간, 면담 내용은 연구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하기 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고, 녹음한 자료는 연구에 사용한 뒤 전사하였다.

5.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문서화된 자료 또는 언어적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의 목적은 이해과 기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Dey(1993)는 자료 분석은 자료가 가진 특징적인 의미와 주제를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해 주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줄여 가면서 분석적 범주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사 작업은 자료 분석의 첫 단계이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문서화된 자료로 기록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 문헌 자료 및 사례 기록 분석

자료수집에 의해 수집된 다양한 문헌 자료들 즉, 최저학력기준제시, 학생운동선수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운동부 지도자 자질향상 및 학생운동선수의 처우개선, 리그정규대회 전환 및 종목별 특성화, 환경개선방안 및 훈련시스템 지원·개발 등의 제도·환경 개선 등을 연구문제에 맞게 학생운동선수의 인권(학습권, 폭력)에 관한 계획 수립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요인과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2009)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참고함으로써 개인별 면담을 위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에서의 주요한 문제들은 연구 질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나 해당 사

례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거나, 재구성을 위한 요구에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심층면담에 의한 내용과 자료를 연구 참여자 각각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참여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학생별로 파일 명을 다르게 저장하였고, 귀납적 범주 분석을 위해 한글 2010으로 전사하여 저장하였다. 전사한 한글 파일을 연구문제에 맞게 실패, 제도, 문제 개선으로 구분하고 분류하여 구조화하였으며, 이와 같이 원 자료를 사례기록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도 중요한 분석 과정이지만 연구 결과를 잘 드러내는 범주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박재정, 2006).

2) 귀납적 범주 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 있는 공통적, 일반적 성질을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질적 자료 분석의 논리인 귀납적 추론이다.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은 참여관찰이나 심층면담, 참조자료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단어 혹은 소주제 중심에서 점점 관련된 중주제, 대주제로 범주를 확대시켜 범주에 따른 특성을 발견하고 범주별 연관을 추구하여 연구목적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크게 4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미리 준비한 주제에 관한 참조자료와 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녹음을 통한 심층면담을 대상자 별로 전사한 뒤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핵심 어휘 및 주제어들을 찾아 파일명을 다르게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발췌된 주제어와 내용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하위목록의 범주들로 구성하였다. 인적사항, 학습권, 폭력 인권, 인권교육, 해결방안으로 각각 분류되어 정리된 내용을 출력하여 읽고 검토하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단어와 특징들을 유사관련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위 범주들로 묶어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문제로 분류된 하위 목록의 범주들을 각각 빠짐없이 감쌀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과 관점에 의해 다양한 시도를 하여 연구 결과의 목록에 드러나는 범주를 완성하였다(김영천, 2016).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분석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형성된 주제어와 범주들은

지도교수님과 질적 연구방법 전문가 및 동료의 협의 및 검정을 통해 헤쳐모이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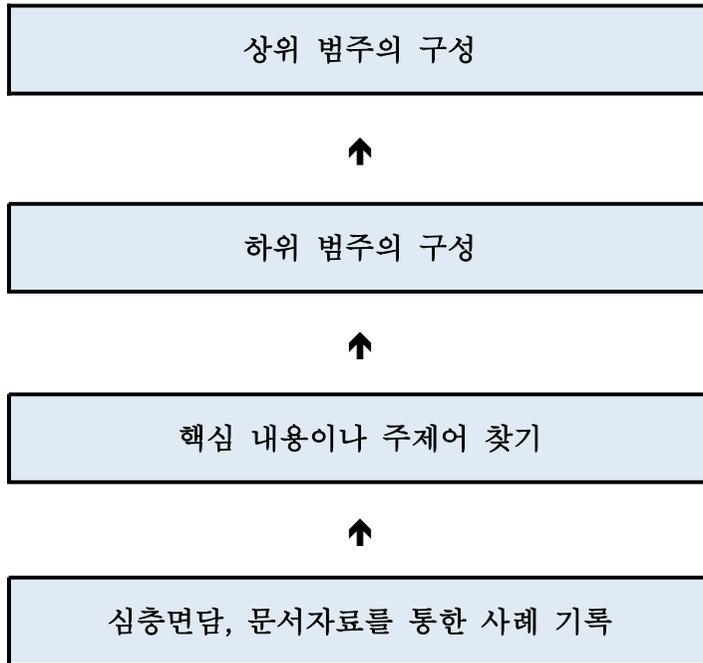


그림 1 . 자료 분석 절차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Lincoln & Guba(1985)의 신뢰성 준거는 질적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연구 활동의 예를 처음으로 이론화하였다(김영천, 2016).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장기간 관찰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관찰하며 특정기간에만 수집된 자료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음으로써, 학생운동선수에 대하여 장기간으로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구성원 간의 검토

구성원 간의 검토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 검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준거 중의 하나이다. 이는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이 과연 맞다고 할 수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김영천, 2016).

다시 말해 연구자가 학습자로서 현장에 참여했고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와 결론을 연구자 혼자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며 그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연구 참여자가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다(네이버블로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분석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보여주고 외부자인 연구자가 내부자인 연구 참여자의 일상에 얼마나 근접하게 접근해서 이해했는지 평가 작업을 거쳐 부족한 자료를 파악하고 연구 목적과 결과에 맞는 더 많은 정보를 부가적으로 수집하였다.

2)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은 연구 과정에 동료로 참여시켜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적, 절차적, 방법적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간과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료 연구자와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 관심 있고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자가 놓쳐 버린 연구 문제, 관점, 아이디어들을 상기시키고 보다 신선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가져 오는데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다(네이버블로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와 사회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동료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3) 트라이앵글레이션(다각도 측정법)

트라이앵글레이션은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통합한다는 뜻이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validity)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김영천, 2016).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한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할 때 연구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네이버블로그,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참조문서자료, 심층면담 등 질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 준비된 질문 등 다양한 참조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별로 깊고 심층적이며 진실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IV. 학생운동선수로의 라이프 스토리

연구 참여자인 학생운동선수들의 전반적인 신상과약 및 운동선수로서 보낸 중, 고, 대학교생활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C 대학교의 학생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한지 평균 약 10년 정도 되었으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좋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코치선생님의 권유 및 스카우트였다. 연구 참여자 모두 운동부 생활하면서 합숙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대학에 와서는 시합이 있을 때, 없을 때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평균 2~3시간이지만 중, 고등학교 선수 시절에는 하루를 훈련으로만 보내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저는 운동 시작한지 약 10년 정도 됐으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장에서 자주 보이다보니 코치님이 스카우트를 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운동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고요. 운동부 생활할 때는 무조건 합숙 생활이었으며 중, 고등학교 때는 시합이 있는 없는 하루를 훈련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에 와서는 평균 2~3시간 정도 훈련하고 하루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E,5).

저는 운동 시작한지는 10년 정도 됐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코치선생님이 권유했어요. 부모님도 선뜻 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운동부 합숙을 하면서 수업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하루를 훈련으로만 했어요. 물론 체육 중, 고등학교 나와서 수업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 고등학생 때는 매일 훈련만 해서 그런지 대학교에 와서 시합이 있을 때는 6~8시간 훈련하지만 시합이 없을 때는 2~4시간만 하다 보니 중, 고등학교 때보다 훈련 시간이 적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B,2).

저는 운동 시작한지 10년 됐고 운동부 애들만 간식만 주길래 운동하면 간식 준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요. 합숙생활은 당연히 했고 중, 고등학교 때 매일 매일 운동만 하다가 대학 와서 하루 평균 운동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불만은 없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됐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A,1).

저는 운동한지 9년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 신체적 조건이 좋아서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소질이 있는 것 같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고 운동 시작하면서부터는 합숙생활을 시작했어요. 체육 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대신 운동만 했는데 대학에 와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시간도 정해져 있어 훈련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 들어요(연구참여자D,4).

저는 운동 시작한지 8년 됐고 체육선생님이 운동 잘한다고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남동생도 따라서 운동을 시작해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저희를 밀어 주셨어요. 운동 시작하면서 합숙생활도 같이 시작했고 수업 대신 훈련만 해왔는데 대학에 와서는 훈련을 평균 2~3시간만 해 훈련 시간이 되게 중, 고등학생 때와 달리 개인적이고 유동적이라 생각해요(연구참여자C,3).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농구만화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농구를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흔쾌히 허락하셨으며 현재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저는 중학교 때는 합숙 경험이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 합숙 생활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는 하루 절반이 운동으로 시작해서 끝났다면 대학교 와서 시합이 있을 때는 2시간, 없을 때는 3시간으로 개인시간도 가질 수 있어 훈련 시간이 매우 적당하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F,6).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운동선수들은 중, 고등학교부터 학생 선수들은 오전 수업과 오후운동이라는 이원화된 스케줄을 해내며 운동 기량을 키워왔다. 오전 수업 후 오후 운동은 대부분의 학생선수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다(김선영, 2020).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스케줄은 대학 진학 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 시절처럼 오전 수업, 오후 운동이 아닌 마지막 목표인 프로진출 및 직업을 갖기 위해 학업을 통한 개인적인 노력과 팀의 성적을 위한 운동을 병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V.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폭력권 침해 실태

1.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침해 실태

1) ‘너는 운동부니까’라는 특별대우

현재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초·중·고 학생운동선수들은 정규수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밀레니엄 세대의 학생운동선수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오전훈련, 오후훈련, 저녁훈련 등 하루 종일 훈련을 받다 보니 잠이 너무 부족하며,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일반 학생들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업시간에 자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러한 학생운동선수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게 내버려 두는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교 때는 수업을 평상 시 하루에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이 받고 저는 체육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거의 공부를 안했어요. 아니 아예 안했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공부 안해도 대학은 운동으로 갈 거라고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E,5).

중·고등학교 때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만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다기보다는 운동하느라 피곤해서 거의 자는 시간이었어요. 어차피 자도 깨우지도 않고 뭐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대학 와서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현재는 시험 기간이 주말로 다 변경되었지만 예전에는 시험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빠졌었어요. 그래도 웬만한 수업은 다 들어가고 딱 하루 전만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학생 때는 수업을 빠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연구참여자B,2).

저는 중학교 때는 수업을 다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는 멀리하고 운동에만 전념했어요. 선생님들도 그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셨고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체육대학이다 보니 운동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더라고요. 일단 운동과 수업 두 개를 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특히 시험 직전에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면 집중도 안 되고 체육수업에서 체육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경우도 많아 혼란스러워요(연구참여자D,4).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오전수업만 들었어요. 오전수업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운동부라고 혼내지도 않고 깨우지도 않고 그냥 가서 자고 애들이랑 놀고 왔던 것 같아요. 아직 1학년이라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 대학교는 경험이 없는데 온라인강의 & 과제는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뭔가 대학교는 착실히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연구참여자A,1).

중학교 때는 그래도 수업을 다 받았고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로 빠진 수업만 빼고는 다 받았어요. 저는 체육 특성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녀서 또 학교가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교여가지고 운동부가 자면은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니 깨어만 있으라고 엄청 강요했어요. 그래도 수업부분에서는 최대한 들었어야 했고 저도 들으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냥 쪽 잤어요. 약간 수업시간에 안자면 운동 시간에 힘든 부분도 있고 당연히 운동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기초 지식이 없어 엄두가 안 나는 상태예요(연구참여자F,6).

중·고등학교 때는 수업을 받긴 받았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덜 받았어요. 학교에 가도 운동을 하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피곤하고 굳이 수업을 받아야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수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C,3).

학생운동선수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 운동에만 집중하며 운동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진로도 이 쪽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대부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였다. 몇몇의 선수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비교적으로 일찍 끝나는 중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등쌀에 밀려 하교 후 사교육을 받았지만 특별히 공부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혼자 훈련을 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더 컸다고 하였다.

중학교 시절에는 보충수업이 운동부만 다 따로따로 해서 받은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제도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이 운동만 했어요. 대학교 때는 그냥 수업을 못 들었을 시에 대체과제를 했었죠. 그래도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충수업을 해주셔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F,6).

중·고등학교 때는 의무수업이다 보니 방과 후나 방학에 보충수업을 해줬는데 그 시간에도 그냥 잤던 것 같아요. 대학 와서는 보충수업 대신 대체 과제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하다보니까 대학 와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연구참여자B,2).

중·고등학교 때 운동부들만 따로 보충수업을 해줬어요. 보충수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안들은 적도 많고 거의 잤어요(연구참여자A,1).

중학교 때는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학교 끝나고 사교육 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따로 운동부를 위한 학교에서 해주는 보충수업은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학원을 그만뒀고요(연구참여자D,4).

운동하고 지금까지 쪽 수업에 안 들어간 날에는 보충수업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출결해 주셨어요. 대학교 와서는 수업이라는 느낌이 달라서 그런 가 수업에 진짜 빠짐없이 잘 참여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E,5).

중학교 때는 운동을 하면서 국, 영, 수학원을 같이 병행해서 다녔고요. 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업을 못 들은 것은 빠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한번 그렇게 빠지면 당연히 다음 진도는 못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학교는 자고 밥 먹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C,3).

학교에서도 시합참가나 시합 직전의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생길 경우 수업 보충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중학교 때 잠깐 실시하고 결국 방치되었다고 하였다.

학생선수들의 현재는 곧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학습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상황 상 학생선수들의 시합참가나 시합 직전의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생길 시 수업 보충 방안 마련이 힘들 경우에는 방과 후 기초학력부진 학생교육에 포함 시켜 맞춤형 개별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학업과 운동 사이에서의 혼란

우리나라의 경우 ‘공부하는 학생 선수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스포츠운영규

정 제 25조인 ‘CO 롤’을 만들었다. ‘CO 롤’이란 대학 학생운동선수들은 직전 2학기 평균 학점이 C(2.0)이상 넘어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최하고 승인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CO 롤’이 시작되어 적용되는 현재 학생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일찍 운동을 시작하여 오전수업만 듣고 하루를 훈련으로 보내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 대학에서는 깊이 있는 전공만 배운다지만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운동실력만 보고 대학에 입학한 현재 학생선수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제도였다. 체육 계열 학과에서는 학생운동선수들을 위해 명확한 제도는 없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넓은 범위 안에서 점수를 주기도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다 보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며 시험 점수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중·고등학교 때는 전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살다가 대학에 와서는 감독님께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셔서 시험을 보곤 해요. 그 자격증을 따서 코치나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떤 길로 갈지 현재 고민 중이에요. 어렸을 때는 공부랑 운동을 어떻게 같이해?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와서 느끼기에는 오전, 야간 운동하고 이외에 시간에 틈틈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B,2).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프로가야지 프로와 실업팀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대학원도 생각중이라 학점도 잘 받으려고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지도자 꿈도 있어서 그 것에 맞게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안했는데 대학교 와서 공부와 운동을 같이 해보니까 충분히 병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F,6).

아직 1학년이라 전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고 당장의 시험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감독님이 계속 자격증 따라고 하긴 하시는 데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학교 와서는 안자고 일반 학생들처럼 수업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연구참여자A,1).

진로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솔직히 운동이랑 같이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운동하고 나면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E,5).

아직 1학년 이다보니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은 저한테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C,3).

저희 종목은 일단 은퇴기간이 다른 종목에 비해 되게 짧고 거기에 대비하는 주변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목표로 갈 것 같아요(연구참여자D,4).

몇몇의 선수들은 막상 대학교에 와보니 학업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까지 운동을 하여 학업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운동에만 투자를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정규수업을 듣고 적당한 훈련을 받다보니 운동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공부, 자기개발)도 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하였다.

운동선수들은 사람마다 종목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 은퇴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은퇴 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국가대표로 확정되어 미래가 걱정이 없는 선수도 있는 반면 자신이 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아 프로나 실업팀의 진학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반사이다. 운동만 몰두해오던 운동선수들은 은퇴 후 허망함을 갖으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적인 연구들은 선수들이 은퇴 후에 갑작스런 삶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로 정서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Guskiewicz et all, 2007; Wyllemaan, & Lavallee, 2004, 김경오, 이규일, 2013 ; 장원일, 2016 재인용).

대학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 멘토링 제를 실시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주변 또래의 도움을 받는 제도를 전반기, 후반기 1회씩 진행하고 있다. 멘토에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시간이 제공되지만 봉사활동시간 외의 대학생에 필요한 혜택들을 더 제공하여 멘토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학생운동선수의 수업결손을 제대로 보충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학생운동선수의 폭력권 침해 실태

1) 합숙 생활 내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학생운동선수 및 운동부 사이에서의 폭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지도자-선수 간의 폭력, 선후배 사이의 폭력, 동기간의 폭력을 대표적인 큰 예로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지도자-선수 간의 폭력이 주를 이루었다면 밀레니엄세대라고도 불리는 2000년대 생인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선후배 사이의 폭력을 많이 겪었다고 하였다.

단체생활하면서 개인적인 기합, 집단 기합 모두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집단 기합은 팀의 문제라고 하면 개인적인 기합은 주로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주로 숙소에서 욕이나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열차려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코치님이나 감독님은 거의 폭력은 안하셨고 대부분 선배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저도 또한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욕도 하고 폭력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선배가 되어보니 성적이나 대학진학에 신경 쓰게 되고 부담감도 커서 저는 잘하자는 의미로 폭력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B,2).

저는 장난 식으로 선배들한테 체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욕도 하고 때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중·고등학교 때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간 적은 없고 단체로 기합 받을 때는 뭐 단체생활에서 파이팅을 안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선배들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혼나면 이해라도 하는데 팀 운동 이다보니 연대책임으로 혼날 때는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A,1).

대학교 때는 체벌 자체가 없고 중학교 때는 집단 기합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선배들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웬만한 폭력, 구타는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났고 제 잘못이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잘못 없이 당하니까 너무 억울했죠. 집단 기합의 경우는 한 명이 물을 흐리면 나머지가 다 같이 주장이 혼났고 그냥 이유 없이 개인적으로는 숙소랑 창고에서 선배들이 머리 박기, 욕, 구타를 한 경우에는 좀 화가 났죠. 그리고 그렇게 체벌을 받다보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데 한 번 미우면 끝까지 미워지고 너무 구타를 받다보니까 스트레스가 커져서 다른 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연구참여자F,6).

대학교 때는 기합이 전혀 없고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집단 기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 체벌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잘못했을 때 이외에는 받은 적이 없고요 집단 체벌의 경

우 주장에게 숙소로 불려가서 기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 종목 이다보니 구타는 없지만 기합 위주였어요. 체벌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부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을 해서 받는 건 아는데 이렇게 까지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E,5).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같은 운동을 하던 선배들이 거의 없었고 같이 하는 동기도 없어서 체벌, 기합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숙소에서는 단체생활을 하는 건데 개인행동을 했다거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단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선배가 후배한테 체벌을 한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D,4).

저는 선배들도 없고 운동을 그만 둔 동기들도 많아서 주변에 저에게 폭력이나 구타, 기합을 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선배에게 잘 못 찍혀서 이유없이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C,3).

2) 폭력의 대물림 및 폭력효과

연구 참여자들은 중, 고등학생 시절에는 폭력을 경험하였지만 대학교 학생운동선수가 되면서 폭력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폭력에 노출된 마지막 세대이며 이 선수들이 과연 지도자가 되었을 때 대물림 혹은 그림자로 폭력 문화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폭력에는 긍정적 체벌과 부정적 체벌로 나누어지는 데 이 부분에 관하여 단체종목 & 개인종목 선수들의 의견이 달랐다.

저도 저희 팀에 최고참이었을 때는 폭력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장이다 보니까 팀원들한테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욱도 하고 폭력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좋은 대학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도 했던 것 같아요. 폭력을 쓰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연구참여자B,2).

중학교 때 후배들에게 일차려 및 욱설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경고로 했는데 선배인 제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효과는 뭐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A,1).

고등학교 때 때리지는 않았는데 분위기 잡으려고 기합을 준 적이 있었어요. 단체운동이다 보니 밀에 후배들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방법이 어긋났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체벌을 하다보니 사이도 서먹해지고 개네들도 뒤에서 욱하면 서로간의 사이가 더 멀

어졌던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F,6).

저는 중학교 때는 후배들한테 기합을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이후로는 한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선배들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순간의 화를 못 참아서 후배들한테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E,5).

같이 운동을 했던 선후배, 동기들이 없어서 체벌, 구타, 기합 등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주변에서 들은 것 기사로 본 경험만 있지 직접 겪어본 적은 없어요(연구참여자C,3).

중·고등학교 때 선후배, 동기들이 없다면 특별히 후배들에게 과도한 관심, 터치, 기합, 구타 등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체벌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운동은 단체생활 이다보니 팀에 피해를 줄 경우에 체벌을 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D,4).

단체종목 학생선수들은 체벌을 통해서라도 운동수행이 좋아져 시합의 결과가 좋고 장래의 문제가 달려있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처벌을 당해서라도 정시적 감정인 기분 상태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려 운동수행에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원유병, 2008)고 이로 인해 여러 지도자 및 선배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경험되어 교육되는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본 단체종목에 속한 연구 참여자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다양한 배움을 바탕으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체벌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반복적인 체벌로 인해 체벌을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내면화된 기억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김선후, 여지은, 2013). 하지만 개인종목 학생선수들은 성적과 진학은 개인의 기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체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저는 아무래도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시대에서는 구타 같은 폭력보다는 언어, 말(비속어)로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선배나 감독, 코치님께 체벌을 받고 나면 아 '안 맞아야 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어느 정도 체벌을 받아야 성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체벌 후에 경기 결과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선배의 구타 또는 성희롱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보고 저도 체벌로 인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연구참여자B,2).

저는 긍정적인 체벌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체벌을 해야 잘 되는 건 아니고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벌을 한다고 해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단지 체벌은 선, 후배 사이도 틀어질뿐더러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어떤 경우는 강제전학까지 본 경우도 있어서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C,3).

솔직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훈련할 때 다 같이 말을 안 듣거나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는 체벌을 받고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저는 맞아야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또 경기력도 향상되니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많이 맞아서 운동하기 싫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A,1).

성적을 올리는데 체벌이 필요하다는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희 운동은 개인적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체벌을 아무리 한다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게으름,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체벌은 긍정적인 효과도 없고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체벌을 받는 당사자는 큰 상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D,4).

저는 개인종목 이다보니 성적이 올리기 위해서 체벌을 한다? 이걸 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체력 기합 같은 부분은 없진 않겠지만 체벌을 통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체벌 후에 경기 결과는 개인종목이다 보니 개인 기량이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굳이 체벌을 통해 효과를 본다? 이 말은 틀린 것 같아요. 또 체벌은 폭력으로 번질 수 있고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벌은 부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E,5).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체종목은 체벌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많은데 지도자는 한명이다 보니 일일이 코치하기도 힘들고 말해서도 안 듣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벌을 받은 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체가 지도자라면 체벌을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다른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체벌 후 경기 결과 또한 체벌을 받고 잘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체벌을 받고 더 못하는 선수가 있어서 경기 결과에는 상관이 없고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 후배 사이에서의 체벌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요(연구참여자F,6).

또한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2009)은 지도자로부터 폭력을 배운 피해자가 후배에게 또 다른 폭력을 하는 가해자가 되고, 그 후배 피해자도 선배가 되어 또 다시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선배-후배간의 폭력의 대물림 그리고 폭력의 악 순환적 반복되는 구조가 연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선수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나 고소를 하여 보복·2차 피해·불이익, 숨방망이 처벌, 체육계의 온정주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따돌림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근거로 스포츠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을 수십 년 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김혁, 2016).

이러한 체벌 및 폭력이 없이도 학생선수들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자, 선수 모두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폭력의 대물림은 또 다른 악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연속선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구조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I.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교육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대부분 초·중학교 때 처음 들어봤으며 중, 고, 대학교 학생선수 시절 중 한 번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권 교육을 받으므로 써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며 선수들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대부분 대응했던 방법은 참는 것뿐이었다고 하였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선수들뿐만 아니라 교사, 감독, 코치의 인권교육 그리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저는 인권 교육을 고등학교 때 받으면서 인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차별을 받긴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인권침해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인권침해라고 생각했으면 제 나를 조치를 취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참았어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제정하면 좋겠고 꾸준히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C,3).

그래도 저희 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인권 교육을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많이 시켜서 '인권'이란 단어 자체는 익숙해요. 저는 딱히 인권 침해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언론에 나와서 각 학교마다 각자 자율적으로 제도를 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연구참여자D,4).

현재 대학 와서도 수업시간에 인권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우리끼리도 인권이야기 많이 하고 인권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인권침해라고 하면 차별, 소지품 검사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때는 모두가 같이 받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E,5).

중·고등학교 때는 체육특성화 학교이다 보니 인권교육을 꾸준히 받았어요. 뭐 영상시청으로 하는 거였긴 한데 그것도 뭐 받긴 받은 거죠. 제가 받은 인권 침해는 선배들한테 욕 같은 언어폭력, 차별이었고요. 대응은 하지 못하고 참았어요. 그냥 애들 다 참으니까 저도 참았죠.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하면 좋겠고, 감독, 코치님도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기적인 상담은 필수고요(연구참여자B,2).

중학교 때 운동부에 입단하고 처음 인권교육을 받았을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
 어봤어요. 인권 교육은 중, 고, 대학교 현재까지 다 받고 있고요. 제가 받은 인권 침해는 고
 등학교 때 3학년 선배들한테 구타랑 처음 운동 시작할 때 동기들의 텃세, 괴롭힘이었어요.
 중학교 때 텃세로 인한 괴롭힘은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도와주었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 크게 한 번 싸우고 그 후로는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선배한테 주기적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계속 참다가 정말 너무 아니다 싶어 코치님께 말씀 드리려고 하니 그 때 선배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참는 선수가 많아요. 학교에서는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 주기적인 상담도 필요해요. 아 그리고 교사, 감독, 코치님도 인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F,6).

중·고등학교 때 영상 인권교육을 받았고요 그 때 인권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겪
 은 인권침해는 선배들의 체벌, 언어폭력이었죠. 저는 뭐 단체생활이니까 밍보이게 행동안하
 고 인권 침해를 겪어도 그냥 참았어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가 학생 인권교육을 강
 화하고 주기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감독님, 코치님도
 별도의 인권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A,1).

정승재(2012)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법·인권교육이 계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관련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타인의 권리를 지켜줘
 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바뀌어야만 한다. 어떤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법·인권의식을 가지
 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출신의 지도자들의 인권
 의식도 문제가 되므로 스포츠선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동임을 명시, 명확한 폭력의 개념 정립, 종합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 정책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 감독기구
 의 상설화,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화, 감시 구조센터 및 상담센터의 확충 같은 중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VII.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개선방안

1. 학습권

미국의 경우 국가가 운동선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올림픽위원회에서 운동선수를 후원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자신 본래의 직업과 펀딩 활동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직접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이며, 아무리 유명하고 특출 난 선수더라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일본의 학생운동선수 또는 학교운동부는 학교 단체의 특수적인 존재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즉, 우리나라 평범한 일반 학생이 하루 대부분의 일상을 학교에서 공부 하며 나머지 시간에 자신이 원하고 흥미 있는 종목에 따라 지역스포츠클럽을 통해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운동부들의 최저학력 등 학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 또한 국가나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전적으로 본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국의 학생운동선수들은 학습보다는 훈련에 매진하며 이로 인해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 특기자 진학 관련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 부상, 중도탈락, 반인권적 지도자의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사건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였다. 결국 이러한 체육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스포츠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내용으로 최저학력 제 이상 학생 대회 참가 가능, 학기,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학생운동선수의 대회 참가, 전지훈련, 훈련시간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1년 계획 안에 포함하며 위반 시 학교가 책임을 물을 것,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운동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보충학습 지원 방안 마련, 주말 리그대회 운영을 위한 국가적 재정 지원 등 학생운동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스포츠 혁신을 위한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전국 도교육청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생운동선수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연계학습, 단위학교 학습 프로그램, 최저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는 ‘학생선수 e-school 운영 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해 겪는 수업결손 등을 학습 보충해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시·공 간 제약 없이 활용이 가능하여 2019년 지난해 전국 3천 74개 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하여 약 4만 8천명 학생운동선수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대학 학생운동선수들의 경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는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7학년도부터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CO이상 되는 학생 선수에 제한하여 U-리그, KUSF 대학스포츠 출전을 허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6개 종목(아이스하키, 축구, 배구, 야구, 정구, 농구)에 참가하는 총 103개 대학의 학생선수가 CO규정을 실시하였다. 2019학년도 2학기 CO학점 미달로 인한 U-리그, KUSF 대학스포츠에 출전이 불가능한 학생선수는 전체 2,356명 중 총 40명으로 약 1.7% 해당한다. 축구 31명(2.4%), 여자농구 1명(2.0%), 야구 8명(1.2%), 이며, 아이스하키, 남자농구, 정구, 배구 등은 전원 기준을 통과했다. CO 규정을 실시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출전 불가비율을 보였으며, 현재는 완전히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네이버스포츠뉴스, 2019).

그리고 2020년부터 모든 대학은 체육특기자들을 모집 시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에 따라 학생부 반영 및 반영비율과 평가기준을 입시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결국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운동선수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힘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은퇴 후에도 다양한 진학·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방안이 주기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폭력권

우리나라의 스포츠라는 타이틀은 곧 승리와 메달, 국위선양이 목표였다. 5·16군사정변 이후의 정권 속에서 스포츠는 정권 유지 수단이었으며 당시 엘리트 선수들을 속성으로 대거 양성하여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승리와 메달, 국위선양은 절대적인 존재였으며 그로 인해 학생운동선수 및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폭력권, 성폭력, 각종 부패와 비리도 용인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선수들의 활약, 금메달 등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만 바라보고 스포츠의 어두운 부분은 묵인되어왔다가 근래에 흔히 국가대표 선수 또는 유명한 선수들이 앞장서서 폭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므로 써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체육계의 비리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이슈화되었지만 여전히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는 심각하게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스포츠 4대악(폭행,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신고센터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 권익센터’ 등 3곳에서 스포츠 비리 상담·신고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지도자들은 모른다,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는 반응이었다. 선수들은 신고해봤자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만 주며 결국 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신고조차 못한다는 의견이며, 신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큰 문제를 막기위해 은폐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려 믿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 폭력, 성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본지에 연락해 신고를 하여도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실이 드러났다.

현재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순환이 다시 한 번 드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및 체육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창단됐다.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운동선수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폭력피해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8월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같이 알고 있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친구 등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가 운영,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직접 실시하여 학생운동선수 폭력,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이며, 학생운동선수 이다보니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전면 익명으로 진행되며 접수 후 조사과정에서 폭력, 성폭력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경찰·전문기관 신고가 이뤄져 징계까지 이루어지므로 활발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하여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체육계의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하여 유·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스포츠 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힘쓰기로 하였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아닌 국가와 정부, 국회가 선뜻 나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 더 이상 선수들의 인권피해 문제가 없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3. 체계적인 인권 교육

故 최숙현 사태 이후 체육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 동안의 운동선수들이 겪었던 피해들, 관련된 비리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다. 그로 인해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단 활동, 가해자들에 대한 영구제명 및 구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 폭력 및 성폭력 상담·신고, 피해조사, 인권교육까지 모두 해결 가능한 원스톱시스템인 스포츠 윤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또 다른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으로 예방활동, 인식개선 전문성, 안전 강화 그리고 인권행정구축 등 5개의 분야를 만들어 학생선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처리 신뢰도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전수조사 확대, 자체 신고센터 설치, 학생선수 상담활동 개선,

학교 운동부 관계자 연수 강화, 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 전개,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자) 전문성 신장 지원, 충남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선수 인권 창구 마련, 실적 위주 행정 항목 정비, 충남교육청 “어울림 톡” 연계 행정처리 간소화 지원, 학교 운동부 안전 강화 예산 지원, 안전한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등이다(쿠키뉴스, 2020).

이처럼 각 도의 교육청에서는 학생운동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법적 방안을 만들어 학생운동선수들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직장운동선수들, 대학부, 초·중·고 학생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및 윤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상을 활용한 인권교육 시청이 대부분이며 실생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는 스포츠윤리교육 권역별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강사교육이 진행되며 프로 7개 단체 및 61개 구단과 협력해 부정행위(승부조작, 도박 등) 상황 대처 능력, 윤리의식 수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윤리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 스포츠윤리교육은 혼자 판단하고 멘탈이 흔들리기 쉬운 학생운동선수들에게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육이다. 이번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 학생운동선수들에게도 이어진다면 학생운동선수들의 윤리와 인권보호에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앞서 연구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도자교육을 이야기 하였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권 교육이 영상시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Untact 시대에 맞춰 ZOOM(비대면 온라인 화상연수)을 이용하여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인권교육, 지도자의 자질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4. 대학 학생운동선수들의 미래 설계 방향

‘학생운동선수’는 첫 번째는 학생이며 두 번째는 운동선수로 2가지 신분을 가지

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공부만 하면 되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공부와 운동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지 학생운동선수라는 신분일 뿐이지 여느 학생과 다름없는 진로와 미래를 걱정하는 대학생이다. 중·고등학교 때는 감독 및 지도자,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 생활해 왔다면 대학에서는 어엿한 성인으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생운동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범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프로나 실업 팀에 스카우트되어 선수생활을 끝낸 후 코치나 감독이 되는 것이 순탄한 인생이자 시나리오겠지만 가혹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졸업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선수들이 더 많으며, 운동외의 학업과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다. 일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직업체험, 진로교육 등을 받으며 큰 범위 내에서 진로를 찾지만 학생운동선수들은 체육관련 직업에서 찾다 보니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선수들이 폭넓은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안에서는 본인의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을 들음으로써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년인 3학년 시기에 진로교육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취업률도 높이고 많은 학생들이 본인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나머지는 선수의 몫이므로 선수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V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폭력권 침해실태에 대해 문화기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문제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학생운동선수 및 체육계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질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권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을 위한 e-school 운영 사업, 대학 학생운동선수들은 2017학년도부터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CO이상 되는 학생선수에 제한하여 U-리그, KUSF 출전을 허용 등과 같은 사업 및 규정을 통해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학습권 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은 체육특기자들을 모집 시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에 따라 학생부 반영 및 반영비율과 평가기준을 입시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으로 보아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피해를 줄이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의 중요성을 깨닫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방안이 개선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권의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인권피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수,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동료 등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 또한 활발히 운영되어 인권피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제정처럼 국가와 정부, 국회가 선뜻 나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나서며 국민들 또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육계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 방안으로 더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시청을 통한 인권교육이 아닌 인권전문 양성하여 대면 스포츠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해

Untact 시대에 맞춰 ZOOM(비대면 온라인 화상연수)를 통한 지도자의 인권교육과 지도자의 자질함양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이 완화될 시 대면 지도자 인권교육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인권문제를 해결이 된다면 중도 탈락하는 선수들이 줄어들며, 학생 운동선수는 더 넓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선수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선수를 위한 진로교육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문체육선수 일자리 지원, 진로탐색 기회 등 체육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상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가져 광주광역시 C대학교의 일부의 학생운동선수로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국가 상황이 개선되면 그 외 지역의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일반화시켜 지역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상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가져 남자 학생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현역 성인선수, 여자 학생운동선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견해의 폭을 넓힌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권에 관한 문제 중 학습권과 폭력(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으로만 구성하였기에 인권 종합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여 폭 넓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로 연구 참여자에 대해 참여관찰이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운동선수들의 훈련 및 시합이 연기되어 심층적인 참여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학교에서 일하는 조교로서 학생운동선수들과의 주기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옴으로써 심층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 상황이 개선되면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더 깊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정화(2017). 인권교육의 의미 재탐색-최근 제기되는 의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5-23.
- 국가인권위원회(2019). **인권용어사전**. <https://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2019). **학생운동선수의 삶을 들여다 보다.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수첩.
- 김경오, 이규일(2013). 은퇴한 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장벽과 대안 모색: 포토보이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3), 25-52.
- 김광옥(2013).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사회학적 제도주의 접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두현, 최선화(2011). 학생선수의 안전 권 보호정책 실태 및 발전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1), 123-153.
- 김석현(2016).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인권의식과 자기관리, 스포츠일탈, 성취목표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선영(2020). 대학에서 학생 선수로 살아가기 - 운동과 학업 병행 경험의 의미. **교양교육연구**, 14(2), 327-339.
- 김선후, 여지은(2013). 청소년 유도선수 지도자의 체벌지도에 관한 본질적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191-199.
- 김수련(2008). **학부모의 체육 과외 활동 선택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천(2016). **제 3판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아카데미프레스.
- 김자영, 이로미, 김진희(2019).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법 교육연구**, 14(2), 63-92.
- 김한범(2017). **학생선수 운동부 정체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혁(2016).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현재(2015).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생활기술과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네이버뉴스한겨레(2017). **한국인의 인권의식. 한겨레신문 언론 보도 자료.**
<https://news.naver.com/>.
- 네이버블로그(2012). **질적연구의 타당도(린컨과 구바의 신뢰성 근거).**
<https://blog.naver.com/l1lmanilll/>.
- 네이버스포츠뉴스(2019).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2019학년도 2학기 C° 미달 학생선수 1.7% 기록.** <https://sports.news.naver.com>.
- 대한체육회(2019). **스포츠폭력·성폭력 신고상담. 스포츠폭력·성폭력이란.** 스포츠 인권센터.
- 대한체육회(2019). **해외 선진국의 대책.** 스포츠 인권자료. <https://sports-in.sports.or.kr/>.
- 데일리스포츠한국(2017). **스포츠 강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갈 길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엘리트 스포츠 일변도 정책.** 박상현 기자.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
- 류태욱, 이주욱(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12), 271-282.**
- 류태호(2003). **학교 체육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성수(1997). **현대사회와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박순오(2010). **태권도 선수의 인권보호 인식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박재정(2006). **초등학교 체육수업 실제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서동엽(2011).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스포츠 기본권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유병(2008). **운동선수들의 언어·물리적 체벌유형과 기분상태 비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3), 167-178.**
- 이데일리(2020).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스포츠인권 향상 위해 역량 집중” 이데일리 언론 보도 자료.** <https://www.edaily.co.kr/>.
- 이민주(2006). **한국무용수의 창작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2009). **중, 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 **한국여성학, 25(1), 35-72.**
- 장원일(2016). **운동선수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정승재(2012).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45-62.
- 정용우, 오현택(2015). 스포츠 인권의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스포츠인류학회**. 10(20). 27-46.
- 정재철(1997). 수용자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민속지학에 대한 논의.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19.
- 쿠키뉴스(2020). **충남교육청, 학교 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http://www.kukinews.com>.
- 학교체육 진흥법(2013). 11690,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정보학회(2014). **지상파 시사 피디들의 전문직주의 변화 : KBS <추적 60분>의 보도본부 시기를 중심으로**. <https://www.kacis.or.kr/>.
- 한국체육철학회(2015). **스포츠윤리**. 대한미디어.
- 허종렬, 나달숙, 이대성(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71-202.
- 홍덕기(2009).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 Dey, I. (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 A User-Friendly Guide for Social Scientist**. london: Routledge.
- Guskiewicz, K. M. , Marshall, S. W. , Bailes, J. , McCrea, M. , Harding, H. P. , Matthews, A. , Mihalik, J. R. , Cantu, R. C.(2007). Recurrent Concussion and Risk of Depression in Retired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39(6), 903-909.
- Linco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MBC뉴스(2019). **“10명 중 1명 성폭력 피해” 성인 운동선수 인권실태 심각**. MBC 뉴스 언론 보도 자료. <https://imnews.imbc.com/>.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Y: Hot, Reinhart & Winston. 이희봉 역(2000).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Wylleman, P., & Lavallee, D.(2004).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ransitions faced by athletes. In M. Weiss(Eds.), **Developmental sport psychology**. (pp. 507-527). Morgantown, WV: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부록2. 심층면접 질문지>

심층면접 질문지

1. 학생운동선수들의 전반적인 신상파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

질문의도 및 목적	구체적인 질문내용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	1) 학년 2) 운동 경력 3) 본인 운동 종목
2) 연구 참여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히스토리에 대한 질문	1) 운동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2)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3)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4) 운동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나요? 5) 운동부 생활하면서 합숙 경험이 있나요? 6) 시합이 있을 시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7) 시합이 없을 시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8) 하루 훈련 시간에 대한 생각은?
3) 학습권 침해 정도 및 이유에 대한 질문	1) 평상시 하루에 얼마나 수업을 만나요? 2) 시합직전이나 대회 출전할 시에는 하루에 수업 받는 시간? 3) 시합으로 인하여 수업결손은 보충수업을 받고 있나요? 4) 보충수업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받았나요? 5) 운동을 그만 둘 경우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6) 공부와 운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7) 수업시간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예를 들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수업을 빠져 수업내용을 모르겠다 등)

2. 학생운동선수들의 운동부 집단 속 집단문화와 폭력문화

질문의도 및 목적	구체적인 질문내용
1) 체벌의 피해자, 가해 자로서의 경험과 체벌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질문	1) 체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개인 기합, 집단 기합, 구타 등) 2) 집단적인 체벌이 발생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체벌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체벌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4) 체벌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5) 체벌은 주로 누가 하나요? 체벌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6) 본인이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체벌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7) 체벌을 하는 이유? 체벌을 통해서 얻는 효과? (욕설, 언어폭력으로 똑같이 물어보기)
2) 체벌(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에 대한 느낌 및 대처	1) 체벌을 받고 나면 드는 느낌? 체벌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했던 대응? 2) 체벌을 내가 남한테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3) 체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후배가 있었는지? 그럴 때 본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4) 연구 참여자는 체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5) 체벌을 왜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연습을 소홀히 해서, 규칙위반, 기본예절, 시합에서 패해서, 이유 없이)
3) 긍정적인 체벌의 효과	1)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벌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2) 체벌을 받고 나면 운동 및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지? 3) 체벌을 받아야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4) 체벌 후에는 정말로 경기 결과가 좋았는지?
4) 부정적인 체벌의 효과	1) 체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2) 체벌 후에 본인에게 가장 큰 부작용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3.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조사

질문의도 및 목적	구체적인 질문내용
1) 인권교육 경험	1)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 인권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나요? 3)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4) 학교생활 중에서 직접 겪은 인권침해는 무엇이 있나요? (의사표현, 체벌, 학대, 왕따나 괴롭힘, 욕 등 언어폭력, 성적공개, 개인정보 유출, 소지품 검사, 성차별, 징계) 5)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6)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해야할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도마련, 자율적으로 제정,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사, 감독, 코치 인권교육, 상담)